「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❍ 제 안 자 : 김성기 의원

❍ 제안일자 : 2026. 10. 02.

❍ 회부일자 : 2026. 10. 08.

❍ 상정일자 : 2026. 10. 13.

2. 제안이유

❍ 평창군의 정원 조성·관리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군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원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,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 등 기본사항 규정(안 제1조~제3조)

나.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육성계획 수립 규정(안 제4조)

다. 정원의 조성 및 지원 규정(안 제5조)

라.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(안 제6조)

마. 정원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규정(안 제7조)

바. 군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사.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9조)

아. 경과조치(부칙)

4.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정원 조성·관리와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특히 군민정원사 양성·활용 및 정원산업 육성·진흥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.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린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며,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규정하고, 안 제11조는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운영 및 실질적인 사업 활용·지원 방안을 명시함.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관련 위원회와 자문단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

❍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정원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군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원문화가 정착·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,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

1. ~ 3. (생략)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□ 수목원 ·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의2. “정원”이란 식물, 토석, 시설물(조형물을 포함한다) 등을 전시·배치하거나 재배·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(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,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유산,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,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.

6. “정원산업”이란 정원용 식물,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·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